

공 시 송 달 공 고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수취인,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14. 11. 6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14. 11. 6 ~ 2014. 11. 25(20일간)

2. 대상자

성명	주 소	비고
노인식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43-5	

3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[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]제39조제3항에 따른
과태료 250만원 부과

4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등유 4,093 ℓ 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한 사실

5. 법적근거

- 위반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3항

- 처분 :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

6. 의견제출

○ 기 간 : 2014. 11. 6 ~ 2014. 11. 25(20일간)

○ 장 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지원과(032-560-4463)

○ 대 상 :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)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7. 기타사항 : 위 공고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
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
으로 간주 처리됩니다.

